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100024-14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6年 版」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주요 질의·회신집

2025.12.16. 해석례까지 반영

국민권익위원회

목차

I 적용대상

사례 1 적용대상(공무원) ····· 9
사례 2 적용대상(지방의회) ····· 11
사례 3 적용대상(공직유관단체 비상임임원) ····· 12
사례 4 적용대상(각급학교 교직원) ····· 13
사례 5 적용대상(언론사 임직원) ····· 15
사례 6 적용대상(휴직자) ····· 17
사례 7 비적용대상(퇴직자) ····· 19
사례 8 비적용대상(행정기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 20
사례 9 비적용대상(산학협력단 직원) ····· 21
사례 10 비적용대상(외국에서 초빙한 강사) ····· 22
사례 11 비적용대상(민간기업) ····· 23
사례 12 비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①) ····· 25
사례 13 비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②) ····· 26

II 직무관련성

사례 1 요청경위(직무 관련) ····· 29
사례 2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①) ····· 33
사례 3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②) ····· 34
사례 4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③) ····· 35
사례 5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④) ····· 37
사례 6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⑤) ····· 39
사례 7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재능기부) ····· 40
사례 8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전공분야) ····· 43
사례 9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자격증) ····· 45
사례 10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국민참여재판 배심원) ····· 47

III 요청기관

사례 1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일반기준) ····· 51
사례 2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산하기관) ····· 54
사례 3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용역관계) ····· 55
사례 4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교육) ····· 57
사례 5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국가기관 계약업체) ····· 58
사례 6 내부강의 ····· 59
사례 7 자발적 강의 ····· 62
사례 8 겸직기관에서 요청한 강의 ····· 64
사례 9 학교(동일 교육청 산하 학교) ····· 66
사례 10 학교(학교 부속기관) ····· 68
사례 11 학교(대학 산학협력단) ····· 69

IV 외부강의등의 범위

사례 1 회의진행 ····· 73
사례 2 회의형태 ····· 74
사례 3 동영상 강의 ····· 75
사례 4 기고 ····· 77
사례 5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 79
사례 6 자문 중 회의 ····· 80
사례 7 평가(서면, 온라인) ····· 82
사례 8 1:1 형태① ····· 84
사례 9 1:1 형태② ····· 85
사례 10 용역·자문수행① ····· 86
사례 11 용역·자문수행② ····· 88
사례 12 용역·자문수행③ ····· 91
사례 13 심사 관련(종합) ····· 94
사례 14 서면자문① ····· 95

사례 15 서면자문② ····· 96
사례 16 시험출제 ····· 98
사례 17 면접심사 ····· 100
사례 18 연주·공연·전시 ····· 101
사례 19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 참석 ····· 102
사례 20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 106

V 사례금

사례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일반기준) ····· 111
사례 2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각급학교 교직원) ····· 113
사례 3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중지위-대학 소속 공무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 115
사례 4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중지위-학교 근무 교육청 소속 공무원) ····· 117
사례 5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중지위-대학병원 교수 겸 의사) ····· 118
사례 6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중지위-교수 직책 겸직 공무원) ····· 119
사례 7 1회의 의미(일반기준) ····· 120
사례 8 1회의 의미(동일한 주제 의미) ····· 124
사례 9 1회의 의미(기고) ····· 128
사례 10 상한액(상한액 이하 지급) ····· 129
사례 11 상한액(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130
사례 12 상한액(횟수 제한) ····· 131
사례 13 상한액(2시간 미만 강의) ····· 132
사례 14 상한액(온라인 강의①) ····· 133
사례 15 상한액(온라인 강의②) ····· 135
사례 16 상한액(외국기관에서 요청한 강의) ····· 137
사례 17 상한액(세금 포함 여부) ····· 139
사례 18 사례금 종류(상품권 지급) ····· 140
사례 19 사례금 범위(교통비, 숙박비, 식비①) ····· 141
사례 20 사례금 범위(교통비, 숙박비, 식비②) ····· 146
사례 21 사례금 범위(이동수당) ····· 147
사례 22 사례금 범위(원고료) ····· 148
사례 23 초과 사례금 ····· 149
사례 24 사례금 변경 ····· 150

Ⅵ 신고

사례 1 신고기한 ····· 155
사례 2 신고방법 ····· 159
사례 3 신고기관(파견자) ····· 160
사례 4 신고 상대방(소속기관장) ····· 161
사례 5 계속적 강의 ····· 162
사례 6 재신고 ····· 163
사례 7 보완신고 ····· 165
사례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반기준) ····· 167
사례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립대학교) ····· 168
사례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의 범위) ····· 169
사례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군부대) ····· 171
사례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학교) ····· 172
사례 13 신고의무 면제 여부(공직유관단체①) ····· 174
사례 14 신고의무 면제 여부(공직유관단체②, 공무수행사인) ····· 175
사례 15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 176

Ⅶ 기타

사례 1 기본권 침해 여부 ····· 181
사례 2 복무 관련 ····· 182

[부 록] ①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의 주요 사례 ····· 185
② 초과사례금 신고서 양식 ····· 186

[참 고]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관련 법령 ····· 187

Ⅰ. 적용대상

I 적용대상

리딩케이스 1 적용대상(공무원)

공무원 강사 강의료 지급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직 경찰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무원 대상으로 4시간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사님께 구청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때 지급 기준이

1. 청탁금지법상 제2조제2호가목 공직자로 적용하여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만 지급 (1시간 초과 상관없이) 하는 것인지
2. 지자체 강의료 지급기준인 일반강사 2급(전현직 5급공무원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사례금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기본 15만원, 추가시간당 8만원, 원고료, 수강인원별 할증료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으로 적용하여 사례금 총액이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을 넘으면 40만원만 주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강사님이나 담당자들도 해석이 달라서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인 60만원까지 수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등은 내부 기준 등에 따라 강의료 상한액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은 그 소속 구성원을 규율하는바,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기관 특성을 반영한 강화된 내용(사례금 지급액 제한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지자체 강의료 지급 기준인 일반강사 2급(전현직 5급 공무원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의 경우 기본 15만원, 추가시간당 8만원, 원고료, 수강인원별 할증료 지급'한다는 규정의 경우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한 것이므로, 해당기관이 내부 지급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딩케이스 2 적용대상(지방의회)

지방의회 의원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지방의회 의원은「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다면 신고의무(요청기관이 국가 및 지자체인 경우 신고의무만 제외)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지방의회 의장

Q 지방의회 의장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A 지방의회 의장도「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딩케이스 3 적용대상(공직유관단체 비상임임원)

○○진흥원은 원내지침[외부강의 및 회의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내지침[운영지침 제3조 적용범위: 본지침은 전직원에게 적용한다.]에 따라 상임임원 및 비상임임원에게는 해당 운영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상임임원의 경우,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용하여 외부자문이나 강의등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임원의 경우 겸직이 허가되며 무보수로, 직종이나 소속이 다양하고 진흥원 내부에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비상임임원 중 공공기관 및 교직에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적용받으나, 개인활동가 및 민간업체 재직자의 경우 별도 관리하여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비상임임원 포함)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제2조제2호나목)이므로, 개인활동가나 민간업체 재직자인 비상임임원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 소속 비상임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령상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리딩케이스 4 적용대상(각급학교 교직원)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5년 동안 학교폭력담당 교사로서 관내 경찰서의 협조 공문 요청으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프로그램(스포츠 활동)을 강사로 지도한 적이 있으며, 경찰서 협력기관인 사단법인 ○○회에서 강사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3년 전 일이며 경찰서의 협조 공문에 따라 공적인 활동으로 적법하게 강사로 참여하여 강사료를 받은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단, 신고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고등학교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동법 제2조제2호다목)이므로 외부강의등을 적용받으며, 사안의 프로그램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의 영향력을 통해서 요청받은 강의·강연 등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서가 요청하였다면 신고의무는 제외될 것이며, 이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대학교 시간강사

Q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적용대상인가요?

A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한편,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는바, 「고등교육법」상 '강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사사례 대학교 비전임교원

Q 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수,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적용대상인가요?

A 「고등교육법」상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학교 기간제 교사

Q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적용대상인가요?

A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사사례 학교법인 운영 수입사업체 임직원

Q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임직원은 외부강의등 적용대상인가요?

A 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리딩케이스 5 적용대상(언론사 임직원)

저는 개인 병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병원환자를 대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종별 기타간행물로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발행인: 병원장, 편집인: 대외협력실장).

이 경우, 병원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나요?
해당된다면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누구인지요?
편집인만 해당되는지, 발행인도 해당되는지 또는 편집인으로부터 행정보고라인에 있는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서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부여되나요?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기업은 언론사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사보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사보의 발행인, 실무 종사자(담당자, 업무책임자 등), 편집위원 및 실제 사보 발행 업무에 참여한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게만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부여됩니다.

유사사례 IPTV 사업자

Q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언론사에 해당하는데, 비슷한 기능을 하는 IPTV 사업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적용대상인가요?

A IPTV 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외국언론사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

Q 외국신문 등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 사업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적용 대상인가요?

A 외국언론사의 국내 지국(지사)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해당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언론사 프리랜서

Q PD, 방송작가, 스텝, 기상캐스터, 앵커 등과 같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적용대상인가요?

A 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은 언론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방송국 외주제작사

Q 방송국의 외주제작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적용대상인가요?

A 외주제작사의 경우 방송제작 위탁계약을 체결한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임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웹진 임직원

Q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웹진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적용 대상인가요?

A 포털사이트, 웹진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언론사 비정규직 직원(계약직 등 포함)

Q 언론사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신고 적용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사의 직원은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언론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리딩케이스 6 적용대상(휴직자)

공립학교 초등교사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2년차이고, 육아휴직수당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시 공립학교, 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외부강의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위 기관들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외부강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따라서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다면 신고의무(요청기관이 국가 및 지자체인 경우 신고의무만 제외)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요청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국가기관)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여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제 규정에 포함된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인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교육청,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교육청, 공립학교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육연수원의 경우 각급 교육청 행정기구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이라면 지방자치단체로 신고의무가 제외될 것이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어 교육연수원의 보다 정확한 직속기관 여부는 관할 교육청 또는 해당기관 등에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복무규정, 공직자등 소속기관 규정 등에 따라 휴직 중에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복무와 관련한 사안으로 복무 관련 소관기관 또는 복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 질병휴직 중 강의

Q 지방자지단체 공무원인데 질병휴직 중에 대학교로부터 사례금이 있는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휴직 중에 강의를 해도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따라서 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다면 신고의무(요청기관이 국가 및 지자체인 경우 신고의무만 제외)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7 비적용대상(퇴직자)

공무원 및 교직원, 언론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강의를 하는 외부강의의 경우 강의료와 사례금 등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전직 장관), 전직 공공기관의 장, 전직 교직원 등 '전직'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후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등으로 다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신분이 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라면 동법의 규율을 받을 것입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면서 사례금을 받는다면 신고의무(국가 또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8 비적용대상(행정기관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① 공무원, ②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④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므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또한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

※ 공직유관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적용대상에 해당함.

리딩케이스 9 비적용대상(산학협력단 직원)

국립대학교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별도 법인입니다.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문 및 공청회 등의 회의 참석을 요청받아 이에 참여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은 학교장이 아닌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별도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미해당).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학교에서 파견·겸직된 교직원은 '교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청탁금지법 제2조2호 각 목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동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사립대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직원

Q **사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 직원이 타 대학교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적용대상인가요?**

A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도의 법인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속 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에 파견, 겸임 등의 형태로 근무 중인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단에 근무 중인 직원이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리딩케이스 10 비적용대상(외국에서 초빙한 강사)

○○교육원에서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수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에서 초빙한 강사의 경우도 동법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나요?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는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리딩케이스 11 비적용대상(민간기업)

[현황]

□ 개요

국가기관이 민간기업에 무상 기술세미나를 요청하여 실시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 추진계획

- (주최) ○○부 ○○본부 ○○○○센터
- (일시/장소) 2016.10.20.(목), 14:00~(2시간) / 설계실(3층)
- (참석대상) ○○○○센터 시설직 및 관심 있는 직원(약 20명)
- (주제/세부내용)

주제	내용	비고
건축용 유리 이해	- 유리 종류 및 특징 - 유리 가공 공정 설명 - 현장 설치 주의 사항 및 검사 방법 등 - 질의 응답	

- (진행방법) 외부강사(주식회사○○○) 초빙

  ※ 강의 대가 없음

- 위와 같이 국가기관이 건설공법 및 재료 등의 변화에 따른 공사감독(공무원)들의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서 민간기업(주식회사○○○)에 기술세미나(무상/유상)를 요청하여 실시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질의

[질문 1]

무상 기술세미나일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질문 2]

유상 기술세미나일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질의 1, 2 종합)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인바, 사안의 경우처럼 강의를 하는 주체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리딩케이스 12 비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①)

공무수행사인 외부강의 강연료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 외부강의에 대한 조항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무수행사인'에 관한 조항은 제11조에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제11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를 준용한다' 하였고, 법 제8조제3항에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가 안 되어 문의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법 제10조 외부강의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사인이 외부강의등의 요청을 받아 강의나 기고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리딩케이스 13 비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②)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사업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협의회가 최근 상반기 회의를 진행하여 회의참석사례비를 지급한 일이 있었는데요.

회의참석비를 받으신 분은 현재 시에서 100%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시설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았을 때는 아무리 민간위탁이라도 시 100%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면 회의사례비를 받지 않는게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알아보니 다른 회의에 참석하셔도 회의비를 받는다고 하시네요.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회의사례비라서 해당 대상이 받아도 되는건지 헷갈려 문의올립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다만, 해당 민간위탁시설 사무국장의 신분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고,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되므로 동법의 외부강의등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

Q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적용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대해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Ⅱ. 직무관련성

II 직무관련성

리딩케이스 1 요청경위(직무관련)

저는 교육청 소속 장학사입니다. 학교 교직원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교육부 주관으로 외부 위탁기관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사풀로 등록되어 저에게 배정되는 연수(학교가 강사 위촉 공문 시행)에 학교로 가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1) 교육청에서 제가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인데, 학교로 가서 정책설명 및 연수 진행 후 강의료를 받는 것이 괜찮은지, 법규 위반 사항은 없는지 고민되어 문의드립니다.

2) 또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을 받게 되어 신고대상에도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 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찾아가는 연수' 활동이 교육청 장학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어 해당 연수 수요기관인 개별 학교(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로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데,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의무가 제외됩니다.

따라서 강의를 요청한 학교가 사립학교라면 신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요청기관이 교육부, 시·도 교육청 또는 국·공립학교(국·공립 유치원,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 대학교)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것으로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강의 요청기관이 외부 위탁기관이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사사례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

Q 자신의 직무 등과 관련하여 요청받는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관련성 판단 시 현재 자기 직무에 한정하나요? 아니면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도 관련이 있나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있어 직무관련성 판단 시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직무'에 대해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직자등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판결 등).

따라서, 직무관련성 판단 시 현재 자기 직무에만 한정하기는 어렵고, 과거에 담당했던 직무 등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사례 임용 전 직무 경력으로 의뢰받은 경우

Q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전 직무 경력으로 인해 외부강의 의뢰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 등 신고대상인가요?

A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소속기관 업무와 다른 업무에 대한 자문

Q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연과 전시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소속 기관의 업무와 별개로 다른 기관의 공연 및 전시에 대한 자문회의를 참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이란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됨을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동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과거 근무했던 경력으로 요청받은 경우

Q 현재 공직유관단체의 연구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과거 다른 단체에 근무하였던 당시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전 직장 또는 관련 기관의 요청으로 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기관과 해당 강의가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으나, 현재 직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해당 강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하는바, 즉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직자등이 그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직무

의 성격을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으로 인해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전공 관련 강의

Q **대학교 교수가 대학교 부설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강의를 한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 교수가 부설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강의를 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강의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2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①)

OOO공단 A팀장은 전시체험시설, 식물원, 야구장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입니다. 최근 △△△공단에서 개최한 「수영장 수질관리 협의회」 참석 요청 공문을 받고, 협의회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A팀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전시체험시설, 식물원, 야구장 등)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수영장 수질관리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해당 활동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제2항). 단 신고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안에서 수영장 수질관리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OOO공단 A팀장이라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3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②)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전문강사의 경우 타 기관에 청렴교육의 요청을 받고 출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청렴전문강사 중에서도 현직인 공무원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청탁금지법에서 외부강의에 대해서 '공직자등의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한 경우' 외부강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청렴전문강사는 현 직무가 청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외부강의로 출강이 가능한지, 아니면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지위나 혹은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전문강사'라는 지위로 현재 직무, 직책이 아닌 상황에서도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서 외부강의로 청렴교육 출강이 가능한지 법령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현 직무가 아니여서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지 않아 출강이 불가능하다면 겸직 신고를 한 후에는 청렴교육 출강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질의 1번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관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등'의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외부강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책에 따라 외부로부터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 2번 관련)

겸직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과는 별개로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복무 관련 법령 소관부처 또는 소속기관 복무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겸직허가를 받고, 겸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딩케이스 4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③)

본인은 2006년 국립○○원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래, 수 년 동안 ◇◇대학교에서 '바다의 이해'라는 교양수업을 매주 토요일에 강의하였으며, 매 학기마다 본부 승인을 받고 출강하였습니다.

본인은 2006.7부터 국립○○원에 근무하였으며, ◇◇대학교 강의('바다의 이해')는 200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나, 직위·직책에서 유래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학교에는 본인의 직무(해양분야)에 관련된 해양학과(혹은, 유사관련 학과)가 없으며, '바다의이해'도 전공과목이 아니고 교양과목에 해당하며, 국립○○원은 사업예산(약 1000억/년 정도)을 외부업체로 발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학교 교수는 조사원 용역사업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전무하고,

또한, '바다의이해'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9:00-11:45)에 진행되므로, 복무와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본인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

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부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왔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유사사례 입사 전 취득한 자격증

Q 입사 전 취득한 자격증을 근거로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외부활동(심의 또는 심의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공직자가 입사 전 취득한 자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공직자가 요청받은 강의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고,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고도 볼 수 없는, 입사 전 취득한 자격증을 통한 강의라고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공무원에게 공무원 시험 관련 강의

Q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졸업한 대학교 학과에서 특강을 요청하였습니다(주제 : 공무원시험 공부 및 사회 경험). 강의를 위해 연가를 사용하고, 강의료는 1시간 10만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강의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어 보이나, 요청 받은 강의는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공무원에게 공무원 시험 공부 강의)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리딩케이스 5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④)

국정과제의 일부로 국가(○○부) 및 공공기관(○○대학교)의 주체로 직업훈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NCS 활용·확산 연수'의 주말 교육과정 강사로 공공기관의 교직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수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교직원을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직무 연관성이 없다면(외부강의로 볼 수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제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나요?(해당 공공기관 교직원은 소속기관에서 기술, 공학 등 본인의 전공분야 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을 의미합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합니다.

직업훈련교사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NCS 활용·확산 연수'의 주말 교육과정 강사로 초빙된 공공기관 교직원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거나 적어도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교직원이 받는 사례금은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1)

Q 개신교(기독교) 계열 "신학대학교 신학과" 교수가

1) "목사"의 자격으로 일반교회 또는 다른 신학대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2) "목사"의 자격으로 교회연합회, 사회사업단체, 선교단체 등 유관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3) 다른 대학교에 학기 중 학기 기간 동안 수업에 "출강"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4) 전공학회에서 논문 발표, 논문 심사, 논찬 등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A 사례금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이라 함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합니다.

1)부터 4)까지의 경우 모두 교수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신학대학교 일반학과 교수(2)

Q 개신교 계열 "신학대학교 비 신학과(일반학과)" 교수가

1) 일반교회 또는 다른 신학대학교에 가서 "설교"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2) 교회연합회, 사회사업단체, 선교단체 등 유관기관에 가서 "강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3) 다른 대학교에 학기 중 학기 기간 동안 수업에 "출강"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4) 전공학회에서 논문 발표, 논문 심사, 논찬 등을 하는 경우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

A 일반학과 교수라 하더라도,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인 이상 1)부터 4)까지의 경우 모두 교수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리딩케이스 6 요청경위(지위·직책 영향력⑤)

노조전임자인 노조간부의 '외부강의등'이 당사 언론사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의 규정하는 사항들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사 노조전임자로서 외부강의등을 요청받는 것' 자체가 '언론사의 노조'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이 자체만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해석에 대해 귀청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도 해당됩니다.

언론사의 노조전임자가 외부 단체에서 언론·노조활동 등에 관한 강연, 강의, 기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언론·노조활동 모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서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리딩케이스 7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재능기부)

현재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년 이상 매주 토요일 제 근무지가 아닌 타 지자체 공공 도서관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기타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재능기부). 근무지의 직무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오로지 토요일에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해당 지자체에서 강사료 예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총 12주차에 해당하는 강사료(1회당 7만원 * 12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 근무처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며 월 3회 강의 횟수 제한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겸직허가 대상 해당 여부는 청탁금지법과는 별개로 복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내용인 것으로, 복무 관련 법령 소관부처 또는 소속기관 복무담당자에게 사전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겸직허가를 받고, 겸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는 포함되지 않음)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수수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에서 별도로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기관별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횟수제한 및 사례금 수수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소속기관 내부 규정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재능기부 일환의 통기타 강습으로서 요청경위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에 따라 요청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에서 공직자등의 수행한 활동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대가를 제공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개인취미)

Q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업무와는 무관하여 극히 개인적인 취미가 있어 그 취미 내용과 관련한 전문도서를 출간(인세를 받는 형식)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이 출판사를 통하여 공직자등인 저자와의 만남을 희망하여 (공직의 업무과 무관한) 취미를 내용으로 하는 도서에 대하여 독자와 저자 사이의 문답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독자와 저자의 문답시간이 유료가 아닌 무료인 경우, 공직자등인 저자와의 만남에서 하는 강연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나요?

A 개인적인 취미를 주제로 한 전문도서의 독자를 상대로 개최하는 저자와의 만남 자리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라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신고의무 또한 제외될 것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과 별개로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제한(겸직허가, 신고의무 부과 및 사례금 수수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8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전공분야)

연구직 공무원입니다. 관련 분야 박사학위가 있고 꾸준히 논문을 쓰면서 논문과 관련된 강의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문화원 등에서 지속되지 않는 단발성 강의를 하고 저의 논문을 축약하여 기고를 원하는 기관에 원고를 제출하고 원고료를 받을 경우 저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맞을까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다수인을 외부의 요청에 따라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싣기 위한 원고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공직자가 입사 전 취득한 자격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고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지도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대한 규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9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자격증)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동법 시행령(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에 의한 국가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강사 활동에 대한 외부강의 여부 질의입니다. 활동 내용은 국가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연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연수 강의이며 대부분 주말에 온라인으로 이뤄집니다.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활동가능하고,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전부터 활동을 해왔으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가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직책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는 아닙니다. 1년에 몇 번을 할지 모르고 제 직무와 무관합니다. 직무와 연관이 없고, 임용 전부터 하던 강의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인데, 공직자가 입사 전 취득한 자격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직무와 관련되지도 않고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지도 않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대한 규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0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공공기관 직원이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되었는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은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 선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로 선정된 것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신고의무에서도 제외될 것입니다.

Ⅲ. 요청기관

Ⅲ 요청기관

리딩케이스 1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일반기준)

○○부 ○○교육원 ○○센터 연수지원팀으로, 센터 직원 외부강의 출강 요청 건으로 문의합니다.

- 개 요 -

· 강의 요청기관: △△도교육청 △△과
· 강의 장소: ○○교육원 ○○센터 대강당
· 강의 내용: 글로벌 역량 교육 관련한 강의 주제 및 내용(다른주제의 강의 2건)
· 출강 대상자: ○○교육원 ○○센터 소속 직원 2명
  가. 교육연수 과정 운영 및 설계 담당 교육공무원 A
  나. 교육연수 강의 담당 원어민 강사 공무직근로자 B

- 질문요지 -

1. 외부기관(△△도 교육청)에서 자체 연수 계획을 기획하고, 센터 강당을 대관(사용료 지급)하여 A, B에게 각각 1시간 이상 출강 요청한다면 사례금(수당)을 지급 받아도 되나요?
   (※ 출강요청 공문시행 예정이며, 강의 내용은 각각 다른 주제임)

2. 출강 장소가 ○○교육원 ○○센터 강당이더라도, ○○교육원 ○○센터 자체 연수과정이 아니며, 외부 출강요청 건이므로 출강이 가능한가요? (※ 본인 직무가 아닌지요?)

(질의 1, 2 종합)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기관 공무직 근로자(B)는 외부강의등 규율을 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를 말하는데,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요청받았는지 판단과 관련하여서는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강의를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교육원 ○○센터 소속 직원(A)이 해당 센터 강당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외부기관인 △△도교육청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강의 요청을 받고 강의를 수행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수강자가 소속기관 직원인 경우

Q 공직자등인 ○○시 지원센터장 또는 직원은 같은 지역 ○○시 인력센터로부터 교육을 요청받고, ○○시 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의 교육을 하고 같은 지역 ○○시 ○○인력개발센터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교육기관인 ○○시 ○○인력센터의 요청에 따라 외부 강의 신고를 하고 강의를 진행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교육의 대상이 전부 또는 일부가 소속 직원인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이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사안과 관련 강의를 요청한 ○○시 인력센터와 강의자가 소속된 ○○시 지원센터가 다른 기관이고,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강의·강연인 경우 그 강의·강연 대상자가 강의자와 같은 소속 기관 직원인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공동주최 워크숍에서 요청받는 경우

Q 중앙행정기관인 ○○부와 ○○부의 산하기관인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강의를 요청받았습니다. △△연구원 직원이 ○○부로부터 공문 요청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가요?

A 외부강의 판단에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안에서 △△연구원 직원이 ○○부로부터 공문 요청받아 강의를 진행한 것이라면 '외부에서 요청' 받아 강연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유사사례 장소가 소속기관인 경우

Q 외부로 나가지 않고 회사 내에 방문한 사람에게 강의를 하였을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가요?

A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는 강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강의를 요청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리딩케이스 2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산하기관)

1. A 중앙부처의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A 중앙부처의 요청으로 A 중앙부처에 외부강의를 하면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2. A 중앙부처의 산하 공공기관이 A 중앙부처 산하 타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게 외부강의를 요청했을 경우 해당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지 및 반대의 경우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질의 1. 관련) 해당 공직유관단체가 A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기관이므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A중앙부처로부터 외부강의등의 요청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상 해당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2. 관련) A중앙부처의 산하 공공기관과 A중앙부처 산하 타 공직유관단체는 A중앙부처의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별개의 기관이므로, 각 기관의 임직원이 상대방 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의 요청을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상 해당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3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용역관계)

용역수행사 B가 용역을 수행하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용역 담당자인 공공기관 직원 A가 해당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 A는 용역수행사 B로부터 발표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신고절차·시기 등은 준수한다고 가정)

※ 다시 말해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발표를 요청하는 주체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니라 용역수행사인 민간기업 B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견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비 일부(발표비)가 담당자인 A에게 다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공직자등이 그의 소속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 수행사인 민간기업으로부터 외부강의를 요청받았다고 하는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에서 발주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용역시행사에서 용역사업비로부터 강의료 등의 지급(사례금 수수)하는 등의 형태의 경우, 사례금 수수가 가능한지는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예산 관련 법령 및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사업 수탁기관에서 요청한 강의

Q **공직유관단체 ○○가 추진 중인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수탁기관 △△의 요청으로 위탁기관인 공직유관단체 소속 직원이 강의를 하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 외부강의등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 객관성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 등으로 요청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직무와 관련된 강의·강연·기고 등이고 그 강의·강의·강연 등이 수탁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 그 강의·강의·강연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예산 관련 법령 및 기준 등에 따라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공동주최자가 요청하는 경우

Q **○○학회와 △△기관(공직유관단체)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학회의 요청에 따라 △△기관 소속 임직원이 토론자로 참여한 후 ○○학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은 경우(외부강의 신고완료), 토론자 본인 소속기관(△△기관)과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기관 소속 임직원이 ○○학회로부터 사례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다만, 토론자 섭외 및 학술대회 총괄을 ○○학회에서 주관함)**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외부기관 등에서 요청한 강의 등을 의미하는바, 사안에서 △△ 기관 소속 임직원이 공동 주최기관 중 하나인 ○○ 학회 요청에 따라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이내의 사례금 수수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소속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학술대회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것이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리딩케이스 4 외부에서 요청한 강의(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교육)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병원(사립대)에 위탁한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부처 예산 70%, 지방자치단체 예산 30%로 투입되며, ○○대학병원이 교육사업 수행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급합니다.)

해당 교육사업은 교육이 필요한 각급 학교, 지역업체 등에서 교육수요를 신청하면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병원에서 △△대학 교수, □□중앙의료원 소속 직원 등에게 교육을 요청하고 교육수요를 신청한 학교 등에 교육을 가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대학 교수 및 □□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강의 수행 후 사례금을 ○○대학병원으로부터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있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공직자등이 본인의 소속기관이 아닌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교육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사업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요청기관은 형식적 판단 사항)
또한,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도 준수해야 합니다.

리딩케이스 5 요청자에 대한 판단(국가기관 계약업체)

현재 ○○소방학교에 실화재 훈련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건설의 주체는 △△라는 민간 업체로, 이 업체가 훈련시설의 건설과 함께 ○○소방학교 화재 교관요원들(소방공무원)에 대한 사용자 교육까지 제공하여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타지역 □□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강사로서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장소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해당 기관 시설 및 소속 소방공무원이지만, □□소방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강사료는 민간 업체 △△에서 지급합니다.

이 경우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 소방공무원들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강사료는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지급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는 외부강의의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이 '□□소방본부(또는 ○○소방학교)'라면 신고의무가 면제될 것이나, 강의를 요청한 기관이 민간업체라면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6 내부강의

같은 부처 내에 소속기관 A와 B가 있습니다.

- 소속기관 A에서는 외부 위원들을 위촉하여 구성·운영하는 'C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C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 소속기관 A에서는 C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불러 곧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회의 당일 소속기관 A에서는 소속기관 B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C 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요청하려 합니다.
- B 소속기관 공무원은 C 위원회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1. 위 사례의 경우 B 소속기관 공무원이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 사례의 경우 '사례금', 즉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해당 강의를 통하여 만약 사례금을 받더라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성이 있고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를 말하므로, 직제상 같은 부처 내 소속기관 간에 요청하는 경우는 외부에서 요청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제외될 것입니다.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사례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에 해당한다면 금품등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예산 사용의 적법성 여부,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수당 지급 적법여부 등은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예산 관련 법령 및 해당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른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사례 소속기관에서 요청한 강의

Q 지방 출연기관에서 행동강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 수령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합니다.
정부과제 사업의 관리지침 상 '평가비용·수당은 수당 지급 기준 표에 따라 집행', '필요 시, 전담조직(전담·겸직인력)에 소속되지 않은 주관기관 내부 직원은 평가·심의 등에 참여 가능'한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나, 저희 기관 내규 상 회의수당의 지급범위에는 회의 및 심사에 초청된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심사수당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두 기준이 상충되는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기관에서 참여한 정부과제 사업의 관리기준과 기관의 내규가 상충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을 우선시하여 적용을 해야 하나요?
2. 정부과제 사업 진행시 전담인력이 아닌 내부직원의 평가수당의 수령이 가능한가요?
3. 외부의 요청이 아닌 내부의 요청에 따라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A 정부과제 사업의 관리기준과 기관의 내규가 상충하는 경우 어떠한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하는지 및 내부직원의 평가수당 수령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해당 정부과제 사업 관리지침을 관장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내부의 요청에 참석하여 회의수당을 받은 것은 동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신고의무를 둘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하시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소속기관에서 요청하여 외부인 대상으로 하는 강의

Q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담당 직무 관련된 강의를 하였는데, 강의대상자가 모두 외부인일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인가요?

A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한다면, 이는 외부의 요청이 아닌 소속기관 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사사례 같은 본부의 다른 소속기관으로부터 요청받는 경우

Q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소속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같은 본부의 다른 소속기관의 요청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 이는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소속기관에서 요청하여 사례금은 위탁업체가 지급하는 경우

Q ○○진흥원에서는 저명한 문화예술계의 인사를 초청하여 일반시민들 대상으로 '명예교사 프로그램' 연간 100회 정도의 무료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이사장의 경우 비상임임원이며, 저명한 작곡가로 이번 '명예교사 프로그램'에서 연간 7회 강의하며, 1회당 1시간 30분을 강의하고 450,000원의 강의료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강의료 지급의 주체는 ○○진흥원으로부터 행사용역을 위탁받은 민간업체입니다. 이 경우 ○○진흥원 비상임이사장이 강의료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명예교사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강의개설 주체는 진흥원으로부터 행사의 진행을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아니라 '진흥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진흥원의 비상임이사장이 '명예교사 프로그램'에서 하는 강의는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상임이사장의 강의료는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진흥원 내부규정 등에 따라 강의료 지급이 가능한 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대학원 강사가 소속 대학 학부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Q 대학원 소속 강사가 같은 대학 내 학부에서 요청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A 내부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요청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에서 토론회에 참석한 내부 직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이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7 자발적 강의

공무원 A가 재학 중인 대학원 교수로부터 학술대회 참여를 안내받고 학술대회에 교수와 함께 공동 발표자로 신청하여 대학원으로부터 발표비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사안에서 귀 기관 소속직원이 재학중인 대학원 강의에서 교수의 학술대회 참여를 안내받고 직접 신청을 하여 대회 발표자로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자발적 강의

Q 공기업 직원이 평일에 중·고등학교에서 진로관련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사례금이 있어 소득이 생기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요청받지 않은 자발적 강의입니다.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강의·강연·기고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강의 영상 등을 유튜브에 탑재하는 경우

Q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 영상 등을 제작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탑재하여 광고 수익을 취득하였다면 이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직자등 본인이 제작한 강의 등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탑재하여 광고수익을 얻는 경우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이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복무규정 등 위반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유사사례 자발적 논문 또는 원고 기고

Q 공직자가 외부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논문 또는 원고를 기고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강의·강연·기고 등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식상 공직자등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청을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경진대회 참가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Q ○○기관 소속 공직자가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공직자가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하여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딩케이스 8 겸직기관에서 요청한 강의

청탁금지법 대상자인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연구원입니다. 저는 연구소에 허락을 받아서 사립대학교 겸임교원으로 겸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립학교 소속으로 강연 요청을 받아서 강연료를 받을 예정인데 어느 기관에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할까요?

출장비 및 식비 여비는 사립학교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까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립학교 겸임교원 소속으로 공모전에 응모함
- 우수상에 선정되어서 사립학교에서 출장비를 지원·출장 예정
- 컨퍼런스에서 우수 사례 발표에 대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공모전 운영 기관에서 제공할 예정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례금을 수수하더라도)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겸직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때 사례금 등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공직자등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겸직기관 요청에 따른 강의(1)

Q 사립대학교 교원인데 타 기관에서 겸직 중으로 해당 기관에서 요청받은 내부 세미나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세미나, 특강 등이 겸직허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겸직기관 요청에 따른 강의(2)

Q 교육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고, 창작 활동에 대한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겸직한 직무인 '작가'로서 강의를 요청받았을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인가요?

A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창작 활동에 대한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연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겸직승인 전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Q 공무원 A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에 겸직허가를 받았습니다. 겸직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복무부서의 겸직허가 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허가 이전 특정 활동' 에 대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안과 같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 여부 결정(통보) 전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면 허가받은 직무가 아니므로 해당 외부강의등은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함

리딩케이스 9 학교(동일 교육청 산하 학교)

교육청, 교육지원청, 각종 연수원 등은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되고, 초·중등교육법 등에 의한 각급 학교는 학교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해 설치되며,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일부 권한이 교육장, 직속기관장, 학교장에게 재위임 되어져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 교육청 산하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관할 교육청 산하 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2.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교육청 산하 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3. 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등학교 교직원이 관할 교육청 산하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요청 주체는 공직자등 본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이 아닌 '외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기관에 대한 설치 근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성을 인정받는 경우 외부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에서 교육청 혹은 그 교육지원청의 관할 하에 있는 각급 학교는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라 교육청과 별개의 공공기관으로서 기관성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사안의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교육청 산하 연수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및 공립 초·중등학교 교직원이 사립 초·중등학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각각 외부강의등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교육지원청과 산하 연수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조직 직제 및 인사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사례 대학교 부설 고등학교 요청

Q 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로 대학 교수님이 와서 학기당 학점이 있는 강의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인 교수가 부설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의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리딩케이스 10 학교(학교 부속기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대학병원입니다. 본원은 대학 부속병원인데 본원의 교직원이 본교에서 요청한 강의를 하게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의과대학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의과대학이 아닌 다른 단과대학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직원이 소속 대학이나 소속 대학의 산하기구 등에서 요청받는 강의를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유사사례 대학교 부속기관 요청

Q 교원이 소속 대학 내 부속기관인 연수원, 교육원 등에서 강의요청에 의해 강의를 하였을 때에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부속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은 '사내강의'로 볼 것이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리딩케이스 11 학교(대학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 강의를 맡기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동시에, 학칙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산하 대학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질문 1] 해당 교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해당 강의가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어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인지요?

[질문 2] 아니면, 동일한 소속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동일 기관으로 보고 외부강의가 아닌 내부강의로 인정하여 학교 내부지침에 따른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요?

[질문 3]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외부강의등을 같은 소속기관장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강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산하기구이고, 사업단은 산학협력단의 소속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사업단에서 하는 강의를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강사료는 학교의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산학협력단이 요청한 경우(1)

Q 대학에 소속된 산학협력단 또는 대학명의로 수주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참여하는 대학 교원들이 동 사업의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과정의 강의·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회의(자문) 등을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교원이 소속 대학이나 소속 대학의 산하기구인 산학협력단이 주최하는 토론회 등에서 하는 강의를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산학협력단이 요청한 경우(2)

Q 국내 ○○대학교와 해외◇◇학원이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내 ○○대학교에서 연수하는 해외◇◇학원 교수에게 국내 ○○대학교 교수가 강의하여 본교 산하 별도 법인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외부강의'로 적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내 ○○대학교의 산하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강의를 외부강의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강사료는 학교의 내부지침에 따라 지급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산학협력단이 요청한 경우(3)

Q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수법인인 동시에 학칙에 따라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산하 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 대학 소속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강의를 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나요?

A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대학교의 산하기구라면 교수가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하는 강의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Ⅳ. 외부강의등의 범위

Ⅳ 외부강의등의 범위

리딩케이스 1 회의진행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유사사례 행사 진행

Q 방송사 아나운서가 행사비를 받고 지역 축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방송사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축사, 기조연설

Q 민간기관이 개최하는 포럼 측에서 공직자등에게 축사 또는 기조연설을 요청하여 공직자등이 해당 축사 또는 기조연설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축사 또는 기조연설이 단순히 축하나 환영인사를 하는 것이라면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 볼 수 없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딩케이스 2 회의형태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교직원공제회의 좌담회에 참석하여 '공제회의 운영 방향이나 개선, 바라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참석수당을 받았는데, 현재하고 있는 직무와 회의의 내용이 서로 관련 없는 내용이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교직원공제회의 좌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해당 좌담회의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교직원공제회의 좌담회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사안의 경우, 교직원공제회는 공직유관단체로 판단되며 공직유관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강의등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리딩케이스 3 동영상 강의

재난대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직원 A에게 ◇◇기업은 재난대비 관련 강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려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 해당 내용을 ◇◇기업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강의를 촬영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의 경우에도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유사사례 온라인 강의(1)

Q **1개 과목에 대하여 온라인 강의를 할 경우 외부강의 신고 시 강의촬영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지 온라인 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와 사례금 상한액은 온라인 강의도 일반강의와 마찬가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적용받는지요?**

A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우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를 마친 날'은 실제로 강의를 수행한 날을 의미하므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날로 봄이 상당합니다.

※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온라인 강의(2)

Q 공공기관에 재직 중 외부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알고 보니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것이고 촬영한 강의영상을 온라인상에 게시하여 특정 대상자분들이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총 2시간의 영상이 제작될 예정이고 요청기관에서는 촬영시간당 6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온라인상에 게시되어 있긴 하지만 교육대상자들에게 한날한시에 일괄상영되는 것이 아닌데 이런 경우 강의 시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그 형태가 동영상 강의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한편, 기 촬영한 강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하였다 봄이 상당할 것이며,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온라인 자문

Q 공직자가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내용의 선정 및 편집 관련한 자문을 하는 경우 용역 및 자문의 형식으로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전달매체가 동영상 강의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나, 사안의 경우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및 관련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강연 또는 회의형태가 아닌 서면심사 등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도 제외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4 기고

1. 언론기관(신문 등)에 기고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대상인지요?
2. 공무원 본인이 졸업한 학교의 회보지에 기고를 해서(1회성) 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학교의 회보에 올린 것도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것으로 보아 외부강의로 볼 수 있나요?

(질의 1. 관련)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제1항).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고 신문에 기고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 2.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사안의 회보지가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외부에 배포되는 잡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원고 작성은 기고로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가 부과될 것입니다.

유사사례 자발적 기고

Q 공직자등이 외부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요청을 받은 외부강의등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자발적인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의를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공직자등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요청을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사례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원고 작성

Q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교수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 등인가요?

A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인문학 관련 책 집필의 '기고' 해당 여부

Q **우리 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학교 교수님께서 인문학 관련 책을 집필하셨고, 회사에서 원고료(집필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상 상한액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기업 블로그에 원고를 게재하는 것의 '기고' 해당 여부

Q **기업 블로그를 운영할 때, 보통 관련 업계의 기자나 교수님들을 집필진으로 섭외하여 한 달에 1~2회 가량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불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자나 교수가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데,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리딩케이스 5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일반잡지 원고(또는 투고), 신문 기고, 라디오 방송 출연, TV 방송 출연, 인터뷰, 서면 자문 등이 회의형태가 아닐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제10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논거는 무엇인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잡지 원고(또는 투고), 신문 기고, 라디오 방송 출연, TV 방송 출연이 회의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의·강연을 하는 형태이거나, 신문·잡지 등에 원고를 보내는 기고에 해당한다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터뷰, 서면 자문 등은 '회의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경우도 아니라면,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리딩케이스 6 자문 중 회의

○○공단 소속기관인 ○○개발원의 연구원(5명)이 △△대학원의 '집행과학 사례연구 자문의뢰'에 따라 연구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활동내용: △△대학원-□□은행 집행과학 사례연구(Science of Delivery case Studies) 중 장애인 의무고용 및 직업능력개발훈련(Mandated hiring of the handicapped and their skills training)에 대해 서면 및 구두자문
- 활동방법: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영문으로 영작하고 전체 보고서는 A4 용지 30장 내외 분량으로 집필 활동 및 연구진행 관련 의견 교환을 위해 □□은행 담당자와 월 2회 이상 화상회의* 실시
- 자문대가: 500만원(100만원/1인당)

※ 국문 원고료집: 500천원, 영작료(50천원*30장): 1,500천원, 회의비(100천원*6회*5명): 3,000천원

[질의1] 위 연구자문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대가 기준을 회의 참여 시마다 산정하는지 연구자문 전체를 1건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2]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없다면, 위 연구자문 활동의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나요?

[질의3] 청탁금지법 시행('16.9.28.) 이전부터 연구자문이 실시되어 연구자문 대가가 정해진 경우에 자문대가를 법 시행 이전 방식과 이후 방식으로 구분하여 지급 받아야 하나요?

(질의 1. 관련) 자문대가 중 회의비는 청탁금지법령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으며, 연구자문 전체를 1건으로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외부강의등 1회의 판단기준(지급주체, 회의일자, 대상, 주제 등)에 근거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질의 2. 관련) 회의비를 제외한 자문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문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 3. 관련) 자문계약 자체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체결되었으나, 자문료(특히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회의비') 지급은 같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당초 계약 내용에 정해진 대로 자문료(특히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7 평가(서면, 온라인)

공기업 경영평가 컨설팅 및 모의실사를 10일에 걸쳐 온라인과 서면평가로 진행하는 경우, 횟수와 1회 평균대가, 1회 평균시간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외부의 요청에 따라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를 갖춘다면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르다면 일별 각각 별개의 강의등으로 보아 별도의 사례금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 및 나목).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평가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동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8 1:1형태①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다른 기관 임직원 1명을 상대로 한 회의 형태의 외부강의를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외부강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닌 1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인데, 이러한 형태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만약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1:1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사사례 1:1 통화 및 서면자문

Q 사립대학 관계자인데, 언론사 기자가 언론 보도용(뉴스 또는 기사) 관련 분야 전문지식 팩트체크 등 자문을 위해 해당 사립대학교수에게 1:1로 통화 또는 온라인 서면으로 자문을 진행하고 해당 교수가 자문료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 자문이 1:1 통화 또는 메일로 진행되었기에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회의 형태로 자문을 한 것은 아니나, 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언론에 뉴스 또는 기사로 배포되었을 것
* 직접 영상 인터뷰나 칼럼기고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환경에 따른 질병예방책 등의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문지식에 따라 내용을 팩트체크해주거나 알려주는 등 내용을 검토해주는 형태의 자문

A 문의하신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만약 그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가 아닌 1:1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9 1:1형태②

교원이 외부 산학협력기업체에 개인(1:1) 자문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로 볼 수 있나요?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보아 대가를 받을 수 있나요?

다수인 대상이 아니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바,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유사사례 교수의 개인레슨 및 단체레슨

Q 음대, 체대 교수가 개인레슨 및 단체레슨(2인 이상)을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단체레슨의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 개인레슨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레슨을 하고 그에 따른 레슨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나,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개인레슨에 따른 레슨비는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사사례 TV 또는 라디오 출연(1:1)

Q 교통안전 관련 교육, 홍보, 연구 등을 하는 ○○공단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TV 또는 라디오에 직접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거나 기자와 1:1 문답을 통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기사나 방송 내용으로 포함되어 송출되는 것이라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딩케이스 10 용역·자문 수행①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역량평가위원(현직 고위공무원, 대학교수)이 지급받는 평가수당이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에 적용되나요? 또는 역량평가위원이 지급받는 평가수당이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항(제8조제3항제3호, 제8호)'에 적용되나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 평가 개요]

○ 사업목적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등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평가하여 채용·승진 등에 적격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3항(고위공무원단)

  *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자를 평가하여 신규채용·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

  *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함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역량평가위원)

  *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1조(역량평가방법)

  *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 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

○ 역량평가위원 현황

- (위촉 자격요건) 전·현직 고위공무원, 인사행정 및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구성·운영) 전·현직 고위공무원 114명, 민간위원(대학교수 등) 156명 등 270명으로 풀(Pool) 구성하고, 매회 9명의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

* (청탁금지법상 역량평가위원 신분) 현직 고위공무원과 국·공립/사립대학 교수는 공직자등에, 퇴직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는 공무수행사인에 각각 해당

*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 '16년도 평가수당 512백만원 편성(1시간당 8만원, 1인 1일 88만원) 지급

○ 평가역량 및 평가기법

- (평가역량, 6개) 전략적사고, 문제인식, 조정 통합, 고객만족, 성과지향, 변화관리
- (평가기법, 4개) 1:1역할수행, 1:2역할수행, 서류함기법, 집단토론

평가기법	내용
1:1역할수행	현안문제에 대한 기자 인터뷰, 업무대책 발표, 부하직원 코칭 등
1:2역할수행	부서·부처 간 업무중복, 이해관계, 갈등상황 조정
서류함기법	여러 가지 현안업무를 처리하는 상황
집단토론	사업선정, 예산감축 등 부처별 공통문제 등을 합의·조정하는 상황

- (평가방식) 평가기법별 2명*의 평가위원이 1명의 피평가자(고위공무원단후보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피평가자의 행동특성 및 태도를 관찰

* 평가기법 중 집단토론은 피평가자 3명에 평가위원 3명으로 구성·운영

* 1회 평가시 9명의 평가위원이 6명의 피평가자를 대상으로 4개의 평가기법별로 교차·중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

○ 역량평가 실시 현황(매회 피평가자 6명, 평가위원 9명으로 구성·운영)

- 12년 74회, 13년 65회, 14년 73회, 15년 69회(연평균 70회)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의미하고, 용역이나 자문은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역량평가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내는 등의 행위로서 용역 또는 자문에 가까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량평가위원에게 지급되는 평가수당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대통령령) 제10조제4항 및 그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리딩케이스 11 용역·자문 수행②

OO도는 도정운영의 전문성·창의성 제고 및 학술연구용역의 예산절감을 위해 무분별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민간전문가와 협업(자문 및 원고청탁)하여 공무원이 직접 과제를 수행하는 「정책과제 자체수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중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원, 교수, 교사, 언론인, 공직유관기관 직원 등)에게 자문료 및 원고료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동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이나 자문의 대가(자문료 및 원고료 등)는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용역·자문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유사사례 자문수행(1)

Q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동일과제에 대해 날짜를 달리하여 여러차례 자문을 받을 경우, 각각을 1회로 보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의 사례금 상한액을 횟수별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자문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에서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본 질문에서의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여서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과 관련한 1회의 판단과 관련하여, 과제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날짜를 달리하면 일별로 각각 1회로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자문수행(2)

Q 원고집필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 후 원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관련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이나 자문의 대가(원고료 등)는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용역·자문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계약체결 금액)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대가(계약체결 금액인 원고료)의 적정성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상한액 제한을 받지 않고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해 자문계약에 체결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정책과제 참여

Q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생략가능 하므로, '도지사' 명의로 시행하는 공문(전자문서 등)으로 원고집필을 의뢰하고 원고결과물을 접수(반대급부 존재)할 경우, 이를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정당한 권원'을 확보한 경우로 볼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공문을 계약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권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문 내용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공문 내용(계약금액 등)에 따라 자문계약이 성립됨을 계약의 당사자로서 민간전문가도 인정하고, 공문을 계약서에 갈음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의 '권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유사사례 대학 연구사업 추진

Q 국립대에서 재직 중인 교수님의 외부강의등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추진중인 사업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수당의 성격으로 해당 사업(연구)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 받고 있으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분도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교수가 참여한 연구사업의 활동이 계약에 따른 용역, 자문으로 볼 수 있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2 용역·자문 수행③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재단법인으로,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증전담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이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인증조사를 신청하면, 인증원에서 훈련받은 조사위원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에 따른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한 후 점수화 기준 및 인증등급 결정 기준에 따라 판정한 결과를 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인증등급을 결정합니다.

조사위원은 우리 원 조사위원 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직이며, 인증조사가 수행된 후에는 해당 조사위원에게 조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수당이 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인증원의 조사위원은 청탁금지법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고, 설령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사인이라 하더라도 조사위원의 조사 업무를 회의나 강의 등의 형태로 볼 수 없으므로 조사수당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유사사례 의료기관 인증조사

Q 저희 공단은 소속기구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라는 곳에 병원인증평가를 위해 타 병원으로 인증조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외부강의 신고를 하고 가는데요. 참석 후 사례금을 받으면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듯 하여 이렇게 인증조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외부강의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며, 외부강의등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인증조사위원이 인증조사 수행 후 받는 수당은 인증조사 수행에 따른 대가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외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입니다.

즉,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형태, 즉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동에 해당되지 않음

병원인증평가를 위해 타 병원으로 인증조사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증조사위원이 인증조사 수행 후 받는 수당의 경우, 제공하는 용역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를 받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연구기관 보고서 작성

Q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소속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중 한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가는 400만원이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개인 용역으로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이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외국서적 번역

Q 외국서적 번역으로 인해 인지세를 받을 경우 법 제8조제1항에서 명시된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서적 번역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번역 인지세가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바, 번역 관련 용역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인지세)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유사사례 교재개발

Q 대상별 에너지 및 원자력에 대한 교재 개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교수 10~15명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약 300페이지에 해당하는 교재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원고료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원고료는 강의를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전문 지식을 요하는 원고료일 경우에도 같은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테고리별 주제가 다른 원고를 집필할 때 동일 전문가에게 각각의 카테고리별 집필한 원고에 대해 원고료를 줄 경우 각각의 원고료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데, 위 사안에서 귀 재단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전문가 및 교수들과 교재 개발 사업과 관련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집필의 대가로서 원고료를 지급하는 경우,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유사사례 코디네이터, 통역

Q 외부 공공기관의 교직원이 외국교원 초청 강의의 코디네이터* 또는 통역을 담당하는 경우 이를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나요?

* 코디네이터의 역할 : 해외전문가 섭외, 개설과정 검토, 해외전문가 안내(항공, 숙식, 학교 등)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강사등이 자신의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외국교원 초청 강의의 코디네이터 또는 통역 담당자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 또는 통역 담당자 본인의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리딩케이스 13 심사 관련(종합)

대가를 받고 논문심사 등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하여 진행하는 경우에도 외부강의로 보아야 하나요? 대가를 받는 서면자문, 온라인 심사등에 대해서도 외부강의로 봐서 신고하여야 하나요?

논문심사, 서면자문, 온라인 심사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바, 신고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도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미술작품심사, 콩쿠르 심사위원

Q 미대교수가 미술작품을 심사, 평가하거나 음대교수가 콩쿠르 심사위원을 할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요?

A 교수의 미술작품 심사, 콩쿠르 심사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사에 따른 사례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리딩케이스 14 서면자문①

출판사(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교과서 검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자문료는 30만원 정도입니다. 검토에 대한 자문료를 받는 게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 사업체가 아닌, 기업에서 행하는 것이라 법률 검토는 되어 있겠거니 싶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자문'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안의 업무가 서면자문 등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이라면 해당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5 서면자문②

공무원입니다. R&D 업체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받은 금전이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18시 퇴근 후 R&D 사업체 주관 화상회의를 하고(회의참석자 공무원 포함 10~20명) 소정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2. 견본 데이터 및 견본 시나리오를 작성 R&D 업체에 제공해주고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위 두 가지 경우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자문은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질의 1. 관련) 상기 기준을 종합할 때 온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경우로서 여럿이 모여 의견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관련) 사안의 자문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자문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면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이라면 해당 원고료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업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제공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6 시험출제

공무원시험위원으로 참석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국가(인사혁신처)가 요청한 것이므로 신고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험수당을 받는 것이 법 제8조에 규정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에 따라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요?

□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

□ 배경

○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공립·사립대학 교수 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공무원채용 시험 문제 출제 및 선정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 시험위원의 종류 및 역할

· 국공립·사립대학 교수: 선정위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

· 현직 공무원(교사 포함) : 재검토 요원, 출제관리직원

· 현직 및 퇴직 공무원 : 감수위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시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역할에 따라 차등 지급/1일 32만원 이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는바, 용역이나 자문은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시험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용역 또는 자문에 가까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신고의무도 없음).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50조에 따라 지급하는 시험수당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유사사례 시험출제(1)

Q 교수가 외부기관에 출제위원 등으로 2일 이상 연금되어 외부활동을 할 경우에도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A 시험출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시험출제(2)

Q 본인은 5급 공무원으로 ○○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문제당 30만원의 출제 수당을 받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 받은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여야 하는데, 필기시험 문제출제는 응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출제하는 행위이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워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고 외부강의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리딩케이스 17 면접심사

직원 채용시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면접 심사료를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 등의 임원 기준으로 45만원/일(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 제외)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그 여부를 알려 주십시오.

면접위원활동은 면접대상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평가를 하는 행위로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리딩케이스 18 연주·공연·전시

1) 공직자등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나요?

2) 대학등에 소속되어 있는 유명한 성악가들이나 연주가들이 국내외에서 오페라, 콘서트 등 방송, 국가기관, 여러기관, 각종 출연을 하는데, 이분들에게도 동일한 외부강연료 한도액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3) 음대 교수님들이 성악, 악기연주 등 외부공연을 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나요?

(질의 1~3. 관련)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 또는 성악, 악기연주 등의 경우는 문화예술 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또한 받지 않을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9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 참석

우리청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위원의 현장방문, 분과위원회 및 간담회 등 참석 시 현행대로 각 국에서 자체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내부 수당지급규정에 따라 자체평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사례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 참석(1)

Q 법령(조례·규칙을 포함)에 근거한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 참석(2)

Q 공직유관단체인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청렴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려고 합니다. 법학 전공 대학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운영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교수들에게 참석 수당등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청렴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이고, 이러한 경우 강의·강연·기고 이외에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사안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근거한 청렴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사례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 참석(3)

Q 공공기관의 임원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법령의 범위

Q 부령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공공기관이 아닌 심의 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이랑 '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되나,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예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④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 행정심판법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과업내용의 확정
2.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리딩케이스 20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공무원 A는 00재단 당연직 이사로, 소속기관에서 당연직 이사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이사회 참석에 따른 회의수당(30만원, 2시간 30분간 회의 진행)을 00재단으로부터 수령(00재단의 이사회는 00재단 정관에 따라 운영)하였습니다.

1. A가 당연직 이사에 대해 겸직허가를 받고 00재단 정관에 따른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요?

2.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이사회 참석에 따른 수당을 수령한 경우 청탁금지법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나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등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바,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참석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유사사례 겸직허가를 받은 학교 출강(1)

Q **공직자등이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3.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강의, 사이버강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강의 촬영행위 포함)

유사사례 겸직허가를 받은 학교 출강(2)

Q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공무원 조교로 재직하고 있는데 대학교에 외부강의 신고 및 겸직허가를 받아 고등학교로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출강을 하고 받는 비용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요? 또 겸직허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A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국립대학교 조교가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고등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강의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정단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겸직허가를 받은 방송 강사

Q 현직 교사도 학교장의 겸직허가를 얻어 EBS강사에 임명되어 EBS와 고용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이때 교사인 EBS 강사가 촬영하는 강의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나요?

A 공직자등인 교사가 소속학교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EBS강사로 강의를 하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사사례 교원의 사외이사등 겸직의 경우

Q **교원이 외부 기업체의 사외이사, 고문, 창업 등에 대학의 승인을 얻어 겸직하는 경우 관련 활동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서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나요?**

- 동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경우 제8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적용되나요?

A 교원이 외부 기업체의 사외이사, 고문, 창업 등에 대학의 승인을 얻어 겸직하는 것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교원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고문·CEO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이 민간기업의 사외이사·고문·CEO등을 겸직하면서 제공받는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이 같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바, 사외이사나 고문 위촉계약 등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보수, 수당 등 반대급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V. 사례금

V 사례금

리딩케이스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일반기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긴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가목 및 나목).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회 강의 당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일률적으로 시간당 100만원이 적용됩니다.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경우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국공립학교 교직원, KBS·EBS 임직원 등)에도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사례금 총액 제한이 없습니다.

유사사례 공직유관단체 직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Q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1시간을 넘겨 외부강의를 한다면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이 있나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참고),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입니다.

유사사례 현역군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Q 현역군인이 외부강의를 한다면 사례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60만원) 내에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나목 참고).

리딩케이스 2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각급학교 교직원)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은 1시간 당 상한액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최대 60만원 이하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라.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 법인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상한액이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6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에서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 등 공무원(군인, 군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육군3사관학교 학교 교수님들은 상한액이 40만원~60만원인가요, 100만원인가요?
2) 학교 재량으로 판단하여 100만원 상한액으로 통제를 해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3) 학교 재량으로(재량으로) 판단하여도 되는 것인가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도 포함)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제2호가목 참고),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의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입니다.

유사사례 각급학교 교직원

Q 대학교 교수님에게 강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우 외부강의시 강사료 제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강사료 지급 시, 방식과 별도의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촬영 예정시간 : 2시간

*인터넷강의 촬영 (약 30분 내외)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의 경우, 국립대 교수 등 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며(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제2호가목 참고), 외부강의등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이 100만원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례금 총액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문의하신 강사료 지급 방식과 준비서류, 지급시 유의사항 등은 청탁금지법에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므로, 학교 교직원이 소속된 대학교 등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유사사례 초등학교 교사 사례금 상한액

Q 초등학교 교사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2호가목).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시간당 100만원입니다.

리딩케이스 3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이중지위 - 대학 소속 공무원과 정부부처 공무원)

동일 직렬임에도 외부강의 사례금 1시간당 상한액이 대학에서 근무 시 100만원, 정부부처 근무 시 40만원으로 적용받는 등 근무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나요?

국립대학교 공무원(직원)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으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동법상의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1시간당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사례금을 수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부처에서 근무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은 1시간당 40만원입니다.

유사사례 공직유관단체와 사립교원 중복 신분

Q 공직유관단체와 사립 교육기관 소속으로 중복된 신분일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A 공직유관단체와 사립 교육기관 중 어느 신분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등을 한 것인지에 따라 상한액을 판단하되, 구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유리한 상한액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현역군인 및 군무원

Q 국방대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각 설치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고 있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설치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하고 있으며, 합동군사대학 등 11개 학교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각각 설치되어 군사 관련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 설치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내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현역 군인 및 군무원 등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100만원)이 적용되나요? 군내 학교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현역 군인 및 군무원 등이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도 해당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하여 각급 학교가 설치된 경우 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지만,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면서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및 나목).

현역군인 및 군무원 등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에도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일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4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이중지위 -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저는 지방교육청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연수원에서 직무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산하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직을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질문)

1. 지방교육감 소속 공무원이긴 하나 학교 근무자를 직속기관에서 강사 초빙 할 경우 내부강사로 봐야 할것인지? 외부강사로 봐야할 것인지요?
2. 외부강사로 판단한다면 청탁금지법 별표2〈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를 적용하여 60만원 적용대상인지, (나)를 적용하여 100만원 적용대상인지요?

A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교육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강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무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 각급 학교의 교직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은 각급 학교 교직원에도 중복하여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기준으로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하는 자가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5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이중지위 - 대학병원 교수 겸 의사)

저는 OO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교수이면서 OO대학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OO대학교 정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상 교원이고, OO대학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공직유관단체 직원에도 해당합니다. 제가 외부강의등을 한다면 사례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 받아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애게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교원의 경우 1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경우 1시간당 40만원의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 자 중 학교교원의 신분도 동시에 가지는 자에 대해서는 사례금 상한액 40만원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공직유관단체 직원이면서 학교교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는 자의 경우 교원의 신분에 따라서 상한액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즉,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사례금 총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리딩케이스 6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이중지위 - 교수 직책 겸직 공무원)

공직자가 겸직허가를 받은 상태로, 겸직하고 있는 직책(교수)으로 회의에 참여했을 때 수당은 겸직 상태의 직책이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의 상한액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1시간 이상 회의 시 상한액인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가목 및 나목).

겸직하고 있는 직책(교수)으로 회의에 참여했더라도 해당 공직자가 겸직으로 인해 해당 직책(교수)의 직분을 갖게 된 것이지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같이 공직자가 일반 공무원 신분과 학교 교직원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직자는 본래 신분(공무원)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아 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교수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7 1회의 의미(일반기준)

본 기관에 외부강의를 온 공직자(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2호나목의 적용기준에 사례금은 총액은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개의 강의가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강의인데, 사례금 총액은 1일당 60만원을 넘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1개의 강의이므로 본 강좌에 대한 총 금액이 60만원이 넘을 수 없는 것일까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일별로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를 판단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 (법 제2조제2호 다목, 라목)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총액 제한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	제한 없음

※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당 100만원(총액 제한 없음) 적용

유사사례 강의일자(1)

Q 국립대 교수(공무원)가 외부에서 1박 2일 교육을 수행한 경우에도 2시간 강의와 같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A 강의등 일자, 대상, 주제(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별개 횟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강의일자(2)

Q 강사 1인이 1주일 과정에 5일 동안 매일 출강하는 경우 건당 강사료를 모두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5급 이하인 홍길동 강사가 □□과정(1주일)에 월~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3시간씩 출강할 경우, 30만원 × 5일 = 150만원을 지급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A 동일 강사가 5일 동안 강의한 경우 일별로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수강대상이 다른 경우(1)

Q 공무원인 신분인 강사님께 같은 날 수강생은 다르나 동일한 내용을 진행하는 2개의 과정에 참여할 경우에는 각각 과정의 한도 60만원으로 봐서 1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수강대상을 달리하는 경우라면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수강대상이 다른 경우(2)

Q 외부강의 시 강의 대상자의 신분(예를 들어 oo회 변호사시험 합격생)은 같으나 단순히 인원을 오전, 오후 두 팀으로 나눠 강의를 하는 경우 대상이 다른 것으로 보아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사례와 같이 수강 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어 오전강의와 오후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보고 각각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강의자가 다른 경우

Q 동일 과목에 2인 이상의 강사가 출강하는 경우 각각의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일반외상」 과목에 ○○대학 응급구조과 교수 3명이 출강하여 강의 시, 각각의 강사 3인에게 모두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주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강사별로 1회의 강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각각의 강사에게 강사료 지급이 가능합니다.

유사사례 요청기관이 다른 경우(1)

Q 같은날 외부강의(대면) 2건이 있고(서로 다른기관), 시간은 각각 2시간입니다.(하루 총4시간) 이때 하루 강의수당은 총 120만원(각 6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수당을 받아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요?

A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주체(요청기관) 등 어느 하나라도 다르다면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요청기관이 다른 경우(2)

Q A기관에서 A주제로 2시간씩 이틀간 강의를 하고, B기관에서 B주제로 2시간씩 이틀간 강의를 한 경우 외부강의 횟수 및 사례금 상한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나요?

A 같은 기관에서 같은 주제로 외부강의등을 하더라도 강의 일자, 요청기관 등이 다르다면 각 1회로 볼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4회의 외부강의등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기준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경우 1회에 1시간당 40만원,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총액 6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각 외부강의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이 될 것입니다.

유사사례 동일기관에서 강의, 자문을 각각 하는 경우

Q 동일기관에서 오전에 강의, 오후에 자문 이렇게 주제가 다른 대외 활동을 하루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강의, 자문 등이 하루에 진행되었는데 그 주제가 다른 강의를 하였을 경우,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자문료 상한가는 각각 적용(강의 및 자문)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각각 적용 시 상한가는 60만원(직원, 2건, 건당 상한가 30만원), 1일 적용 시 상한가는 30만원(20만원 X 1.5 = 30만원)입니다.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A **[자문 관련]**

자문활동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 바,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위 질의의 '오후 자문'의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서 '1회'의 의미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가 같은 날에 설사 동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강의주제(내용)를 달리 하는 경우라면 오전·오후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합니다.

리딩케이스 8 1회의 의미(동일한 주제 의미)

공무원(1회 상한액 : 최대 60만원)이 하나의 교육과정 내에서 여러 개의 세부 주제를 다루는 경우, 구분되는 세부 강의가 포함된 경우에도 이를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보고 강의로 상한액을 회별로 적용할 수 있나요?

[사례] 한 명의 강사가 교육과정 중 다수의 과목을 하루에 진행하는 경우

① 1강 "지방자치법 의회편", 2강 "헌법"

② 1강 "예산안결산분석 및 검토 I (예산의 원칙, 예결산 심사 주안점),"
2강 "예산안결산분석 및 검토 II (예결산 심사 사례)"

③ 1강 "행정법 기초", 2강 "법제 일반원칙"

④ 1강 "조례 입안", 2강 "조례 검토 및 분석"

[프로그램 운영 구성표(안)]

1. 제2차 주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성표

구분		대주제	세부주제	강사
7 – 15	09:00~11:00 (2H)	자치법규론	지방자치법 의회편, 헌법 (2H)	이OO
	11:00~13:00 (2H)	우리나라 감사제도 및 행정사무감(조)사	감사제도일반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이해 (2H)	김OO
	14:00~16:00 (2H)	우리나라 재정구조와 지방자치단체 예결산	국가 및 지방재정 (2H)	신OO
	16:00~18:00 (2H)		예산안결산분석 및 검토 I (2H)	
7 – 16	09:00~11:00 (2H)		예산안결산분석 및 검토 II (2H)	
	11:00~13:00 (2H)		예결산 실습 및 강평 (2H)	
	14:00~16:00 (2H)	자치법규론	행정법 기초, 법제 일반원칙 (2H)	이OO
	16:00~18:00 (2H)	우리나라 감사제도 및 행정사무감(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I (2H)	김OO
7 – 17	09:00~12:00 (3H)	자치법규론	조례 입안, 조례 검토 및 분석 (법령안 편집기 포함) (3H)	이OO
	12:00~13:00 (1H)		조례안 실습 및 강평 (1H)	
	14:00~16:00 (2H)	우리나라 감사제도 및 행정사무감(조)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II (2H)	김OO
	16:00~18:00 (2H)	회의 운영 및 기타 의정활동 지원	자료요구 및 자료분석방법 (2H)	박OO

A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사례금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례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귀 기관에서 제시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구성표를 고려할 때, 강의가 대주제, 세부주제로 구분되어 있으나 세부주제의 경우 대주제 하에 실질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으므로, '대주제'를 기준으로 1회로 봄이 상당하며, 동일한 대주제를 다른 일자에 진행하는 경우 일자별로 각각 1회의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4대폭력 예방교육

Q 4대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하여 현 경찰공무원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각각 1시간씩 총 4시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내용(주제)가 다른 경우 외부강의료를 각각 지급 가능하게 되어 있는바, 이 경우 각각의 주제로 보아 160만원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에 있어서 강의 일자, 강의주제·과목, 수강대상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 등 일자가 다르다면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강의일자에 프로그램상 강의주제가 여러 개이나 실질적으로 4대 폭력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4개의 강의를 합하여 하나의 1회로 봄이 상당합니다. 참고로, 쪼개기식 편법 운용을 통해 사례금이 과다 지급된다면 청탁금지법상 저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반부패 법령 강의

Q 공직자등이 동일한 강의일자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등을 주제별로 나누어 강의를 한 경우 주제별로 1회로 볼 수 있는지?

A 다만, 같은 강의일자에 프로그램상 강의주제가 여러 개이나 실질적으로 반부패·청렴 법령이라는 동일한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3개의 주제를 합하여 하나의 1회로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교과목별 같은 강의(1)

Q **[현황]** 금융기관 업무의 특성상 실무전문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은 일반 시중 은행 업무 뿐만 아니라 금융 공공기관의 업무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노하우를 금융업계 전반에 공유하기 위해 해당 임직원을 초빙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NCS를 적용할 경우 대단위 수준에서 교과목이 편성되고 교과목별 세부내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질문]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전문 교육과정에 금융 공공기관 직원('공직자 등'에 해당)을 강사로 섭외하여 커리큘럼에 따라 매 교시 (보통 1교시부터 8교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교시마다 5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진행)마다 다른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단, 표면상 드러나는 교과목은 8교시 모두 동일할 수 있음) 각 수업교시별로 별도 사례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A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날에 동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강의주제(내용)를 달리 하는 경우라면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업 교시 별로 사례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귀원의 경우 NCS의 구별에 따른 각 교과목별로 하나의 강의주제(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교과목별 같은 강의(2)

Q 1.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2.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3.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포함)이 다른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인정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A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3.번과 관련하여, 교육내용 또는 교육주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날의 모든 수업 교시 별로 1회의 사례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인재원의 교육과정에 교과목이 구별되어 있고 각 교과목을 같은 날에 같은 교육대상으로 여러 교시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는 경우에는 각 교과목별로 하나의 강의주제(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출강일, 수강대상은 동일하나 주제가 다른 경우(1)

Q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포함)이 다른 강의는 별개의 강의로 인정할 수 있나요?

A 교육내용 또는 교육주제가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날의 모든 수업 교시 별로 1회의 사례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교육과정에 교과목이 구별되어 있고 각 교과목을 같은 날에 같은 교육대상으로 여러 교시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는 경우에는 각 교과목별로 하나의 강의주제(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출강일, 수강대상은 동일하나 주제가 다른 경우(2)

Q 동일과정 동일인에 다른 강의주제로 강의 시 강의주제당 각 1건으로 인정, 강사료 지급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5급 이하인 홍길동 강사가 0월 0일 □□과정에 4~5교시(2시간)은 「청렴」을 주제로, 6~7교시(2시간)은 「인사」를 주제로 강의시, 2건의 강의내용으로 보고, 30만원 + 30만원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 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날에 동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강의주제(내용)를 달리 하는 경우라면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한바, '청렴'과 '인사'는 서로 상이한 주제에 해당하므로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출강일, 수강대상은 동일하나 주제가 다른 경우(3)

Q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동일인에 대한 오전 <특강>과 오후 <발제·토론>을 내용(주제)가 다른 별개의 강의로 보아 2회 강의료(사례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A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개설 주체나 전체과정을 단위로 하면 1회의 의미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으므로, 강의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전 특강과 오후 발제·토론이 같은 날에 동일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하더라도 강의주제(내용)를 달리 하는 경우라면 오전·오후 각각을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리딩케이스 9 1회의 의미(기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의 경우 1시간이 초과하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고의 경우 1건의 상한액이 40만원이 최대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은 얼마인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입니다. 따라서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기고는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기고 1건당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며, 참고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라면 1건당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및 나목, 제2호가목).

유사사례 기고의 상한액 기준

Q **청탁금지법 제10조가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의 대상에는 "강의, 강연, 기고 외에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명목을 불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고, 서면 자문 등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기고, 서면 자문을 요청한 경우 기자 자문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기고 및 자문료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A 시간을 정할 수 없는 기고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1건당 상한액으로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다목).

청탁금지법상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서면자문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딩케이스 10 상한액(상한액 이하 지급)

공공기관 외부강의 수당 지급기준 이내로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기관 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에 따라 강의료가 시간 당 25만원으로 1시간 초과 시 12만원이 추가되어 2시간 기준 37만원 입니다. 수당지급 기준 이내인 20만원으로 수당지급이 가능한가요?

1. 20만원으로 상한액 이하로 수당 지급할 시, 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나요?
2. 무조건 지급 기준의 금액을 집행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 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각 규정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기관이 기초(마련)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자체 지급 기준에 따른 사례금 계산

Q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는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할 때 공무원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은 40만원, 1시간 초과 시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자체지급기준에 따라 1시간 10만원, 초과 시간당 8만원으로 계산하여 3시간 강의 시 26만원(10만원+2x8만원)을 지급하는데, 100분에 150에 해당하는 15만원(10만원+1/2x1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서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딩케이스 11 상한액(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 규정으로 제10조에서 외부강의등을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시간당 4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실무상 개인이 동일 기관에 연중 수회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당한 권원(외부강의 요청 공문 등이 있고 정당한 외부강의인 경우)이 있다면 한 기관으로부터 연간 총합계 300만원을 초과해서 외부강의등을 수행해서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 각기 다른 사유로 매 회 50만원으로 7회 강의해서 연간 350만원을 받는 경우 제8조제1항에 저촉 되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행동강령 및 관련 법령과 소속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출강 횟수 제한, 겸직허가 신청 의무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2 상한액(횟수 제한)

대학교 교수님들은 특성상 직무관련된 외부강의를 매우 많이 나가고 계십니다. 요청이 많이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월 3회를 초과해서 외부강의를 나가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때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0회를 초과하든, 20회를 초과하든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인지요? 여기서 초과하는 외부강의는 모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별도로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월,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또한, 개별기관의 행동강령으로 외부강의등 횟수 등에 대한 상한을 둘 수 있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사사례 횟수 및 연간 상한액 제한 여부(1)

Q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경우, 외부강의 횟수제한(월,년) 및 연간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기준이 있나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횟수제한(월,년) 및 연간 사례금 상한액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횟수 및 연간 상한액 제한 여부(2)

Q 국가 및 지자체 등에서 강의를 할 경우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3회 6시간 이내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강의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척하지는 아니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의 횟수·시간 제한도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3 상한액(2시간 미만 강의)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고, 1시간 초과시 상한액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1시간 30분 강의를 했다면 강의료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을 한 경우, 초과한 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고, 초과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1시간당 상한액인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수가 1시간을 초과(90분)하여 강의 등을 하였다면 200만원까지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기관 내 별도의 지급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1시간 미만의 강의

Q 현재 기관 내 1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인 기준이 있으며, 별도의 상세 기준은 없습니다. 국립대학법인 교수가 20분 강의 시 100만원 까지 지급이 가능한가요? 국립대학법인 교수가 30분, 40분 등 1시간 내에 어느 시간을 강연할지라도 상한액 이하로만 지급하면 위반이 아닌 것인지요?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으로, 동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시간당 사례금은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딩케이스 14 상한액(온라인 강의①)

외부 요청에 따라 교원이 온라인 강의(3시간 분량)를 최초 1회 제작하여 제공하고, 해당 강의가 이후 온라인에 계속 게시되는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산정 기준을 문의합니다.

* 외부강의 사례금은 '최초 1회, 3시간 강의' 기준으로 산정하여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 해당 강의가 일정 기간(예: 한 달) 지속적으로 게시되어 실질적인 제공 시간(예: 24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그 전체 시간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 전체 게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내(예: 1일 6시간, 월 3회)에서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은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100만원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동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해당 온라인 강의의 형태 등을 확인하여 위 기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 최초 1회 제작하여 제공한 영상물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를 수행하였다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온라인 강의가 게재된 후 해당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계약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대가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만약에 처음부터 온라인 영상강의 제작이 목적이었다면 용역·자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방송출연

Q 강연자로서 생방송 출연을 하는데, 실제 방송에서의 강연시간은 1시간 내외이나 방송 전 리허설 등 준비시간을 포함하면 총 2시간 가량 소요된 경우된 경우 사례금 상한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나요?

A 방송출연과 관련된 사례금의 경우 실제 촬영한 시간이 아니라 방송에 송출된 시간인 1시간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5 상한액(온라인 강의②)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 중입니다. 오늘 문의드릴 사항은 '외부 강연' 및 강연 촬영 동영상에 대한 '저작재작권 독점적 이용허락' 관련 비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가 의뢰받은 사항은

1) 1시간 동안 강연
2) 강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허가권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강연을 의뢰한 재단에서는
   1)번 사항에 대해서는 40만원의 강연료를,
   2)번 사항에 대해서는 60만원의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위 사항에서 2)번 사항의 경우 1)번의 일회성 강연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판단되어 비용을 지급하고 이용권을 재단측에서 구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급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질의 1.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강연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으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나목 참고), 6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 2. 관련) 한편, 공직자등의 강연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영상물 이용권에 대한 비용은 계약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상 반대급부 등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영상의 독점 이용 허가권 등 관련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바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별도의 저작권료 지급

Q 강의를 녹화하여 자료를 만들고 강의사례금과 별도로 녹화 강의 자료에 대한 저작권료로 3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진행하는 녹화 강의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로써 외부강의등 형태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 및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의 용역, 계약상 반대급부 등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등 관련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한 바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대가의 적정성 여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리딩케이스 16 상한액(외국기관에서 요청한 강의)

현재 국내 사립대학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외국기관과 외국대학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는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서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기관이나 외국대학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 그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유사사례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Q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로부터 강의를 요청 받을 경우, 사례금 상한액이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계 기업이라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해진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유사사례 국내 공직유관단체가 요청한 해외에서 수행하는 강의

Q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공직유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해외 연수에 초청되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중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에 해당할까요?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르면,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요청한 자가 국내 공직유관단체인 경우라면 장소가 해외일지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리딩케이스 17 상한액(세금 포함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기관에서 외부강의등을 해달라고 하며 사례금으로 4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례금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세후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유사사례 외부강의 신고 시 세금 포함 여부

Q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 시에는 세후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세전금액 상한액 준수)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자등이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인 세전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며,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경우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8 사례금 종류(상품권 지급)

청탁금지법 제10조를 보면 외부강의 제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외부강의 대가로 일반적으로 입금되는 금전(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구체적인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금전으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사사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Q **대학교 교수에게 기고를 의뢰하고 상품권 100만원을 사례금으로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대학교 교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라면 1건당 100만원의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게 되며, 이때 특별히 사례금을 금전으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금전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품으로 받는 경우

Q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외부의 요청에 따라 발표를 하고 그 사례로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 받을 예정인데, 금전 대신 그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아도 되나요?**

A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을 금전이 아닌 금전에 상당하는 금품등(각종 물품 등)으로 제공받을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수수가 가능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품등의 가액을 산정할 때 시점은 행위 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통상의 거래가격인 시가를 토대로 산정해야 할 것인데, 이 때 '통상의 거래가격'이란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9 사례금 범위(교통비, 숙박비, 식비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으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1시간 상한액 40만원(사례금 총액 한도 1시간 초과 시 150%까지 수수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어, 1일 최대 60만원까지 수수 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서 '사례금 총액'이라는 표현이 강의료 자체에 대한 상한액인가요? 아니면 해당 강의에 대한 강의비, 여비, 숙박비, 식비 등 모든 비용의 총액이 60만 원인 건지와 만약, 어떤 직원이 강의료 60만원 그리고 여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 초과사례금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공직자등은 소속기관 또는 외부강의등 요청기관 중 한 곳으로부터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의 여비는 수수가 가능할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수행하는 공직자등은 사례금과 여비 수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의 여비가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교통비 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사안에서 공직자가 강의료 60만원과 여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추가 비용을 받는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소속기관 여비 규정 내 실비 수준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받는다면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아 초과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속기관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수준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큼을,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60만원 외에 여비, 숙박비, 식비 등 일체 비용만큼을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국외소재 국가기관으로부터 여비 수수

Q 국외에 소재한 국가 기관으로 부터 강연요청을 받아 해외에 강연을 하러 가는 경우, 국외 출장비(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 등)을 지원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 외부강의 초청 시 출장비(교통비, 숙박비 등)의 지원이 해외 출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A 요청받은 강의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요건을 갖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외부강의등 요청 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의 요청을 받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강의가 업무에 따라 수반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사사례 교통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Q 강의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소속의 강사에게 강사료 이외에 교통비 실비와 교육생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생활관 및 식사(단체급식)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례금의 제공으로 볼 수 있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일비,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 포함 여부

Q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 적용기준에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3항의 '일비'와 제18조제1항의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가 포함되나요?

A 강사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등의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하여 해당 강사에게 외부강의등 사례금 이외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3항의 '일비' 및 제18조제1항의 '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는 교통비 등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해당 여비 등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으며,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유사사례 근무지내 여비(관내)

Q **관내 교사가 관내기관에 외부강사로 온 경우, 강사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용하여 실비 지급으로 알고 있으나, 관외가 아닌 관내인 경우 근무지내 여비 규정(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에 따라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나요?**

*** 근무지내 여비는 일비 개념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례금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외부강의등 요청 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및 관외 여부와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는 외부강의등 요청 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에 따른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여비 변경신고 여부

Q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이하 여비)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비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5일 이내 보완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각 기관의 여비규정 내 실비수준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여비 관련 사전 신고 내역과 실제 수수 내역이 상이하더라도 5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예) 외부강의 신고 시 사례금 40만원(여비 2만원 지급 예정)으로 사전 신고하였으나, 추후 실제로는 사례금 40만원(여비 1만원 수수)으로 지급받은 경우**

A 여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엄격하게 신고 기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동법 외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등 내부 기준에 따라 외부활동과 관련된 신고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 후 적절하게 조치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신고와 관련하여 판단이 애매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공공기관별 적용 여비규정 의미

Q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을 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기관의 규정을 의미하는지, 초청한 외부강의자 소속기관의 규정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제2호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2] 제2호라목의 '공공기관'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소속기관으로부터 출장여비 지급

Q **외부강의 사례금에 교통비, 여비 등의 경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A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출장비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기관 내부규정 등을 고려하여 검토(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20 사례금 범위(교통비, 숙박비, 식비②)

저희가 한국의 교육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서 현지(예: 아프리카)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보통 강연료에 대해서는 고사를 하셔서 저희가 일부 여행경비(비행기표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강연사례금 관련하여,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 경우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지요? 강연 사례금의 경우 받으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실비 수준의 교통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교통비가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이라면 청탁금지법상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신고 의무도 부과됩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 상한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 상한액은 공직자등 소속기관의 여비 규정 등을 따르면 될 것이며,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은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리딩케이스 21 사례금 범위(이동수당)

우리 기관 임직원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타 기관의 요청공문에 강사료, 이동수당, 교통비(실비 지급)로 구분하여 사례금을 지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동수당과 교통비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져, 외부강의를 의뢰한 요청기관에 확인해보니 이동수당이란 여비와 별개로 소요시간 보전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2. 적용기준에서는 상한액을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사례금 제공자가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는데 지금과 같이 이동수당(여비와 별개인 경우)인 경우도 사례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여비와 별개로 지급하는 것은 여비에 대한 중복 지급으로 볼 수 있는바, 이동수당과 같이 여비에 대한 중복 지급으로 볼 수 있는 명목의 금품등 지급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22 사례금 범위(원고료)

공무원 원고료 지급에 따른 문의입니다. 강사는 공직자(4급, 5급 공무원)이며, 2시간 강의료는 총 370,000원이 지급됩니다. 강의료와 별개로, 원고료 1면당 13,000원(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 2시간 최대 12매, 총 156,000원 강의료와 원고료를 합하여 526,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1. 공무원에게 강의료를 주는데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를 지급해도 되나요?
2. 만약 가능하다면 강의료 및 원고료 지급시 상한액이 있나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비추어 사안에서 강의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강의료, 원고료 등 합산한 금액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내라면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23 사례금 범위(초과사례금)

강의 요청 기관으로부터 초과 사례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4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 위반시 제재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등의 의무	신고의무 (사례금을 받는 경우)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시 제재	징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유사사례 초과사례금(국가가 요청한 강의)

Q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는데, 이들 기관으로부터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외부강의 신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하면서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만 제외되고 사례금 상한액은 여전히 준수하여야 하는바,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았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5항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7조).

리딩케이스 24 사례금 변경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 외부강의 신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A직원이 외부강의 신고서 작성 시 사례금을 2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강의를 다녀온 후, 기관 착오로 20만원이 아닌 30만원으로 외부강의 수당이 변경되었다고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A직원은 외부강의 수당 변경금액은 기존 20만원 → 3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재신고 하면 될까요? 아니면 10만원 만큼은 지급받지 않아야하는 건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 사례금 총액 등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사례 신고 이후 사례금 변경

Q 신고한 외부강의 사례금 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따라서, 실제로 받은 사례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교통비 변경

Q 외부강의 신고 시의 교통비를 실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 사례금 총액 등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제로 받은 교통비를 기준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Ⅵ. 신고

VI 신고

리딩케이스 1 신고기한

본 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1.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강연·기고에 해당되어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 건명 : 타 공공기관 내부위원회(투자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참석 후 회의참석수당 수령(2회 40만원 수령)
2.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면, 주말 제외 근무일 기준 10일인지 등의 별도 기준이 있나요?
3. (위 회의가 신고 대상인 경우) 3년 전 신고 대상의 건이지만 징계 건에 포함 혹은 징계 양정에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질의 1. 관련 :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신고 의무가 있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해당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공직자등의 구체적인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이랑 '위원회 등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되나,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라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아니라면 회의참석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의 2. 관련 : 기간 계산)
청탁금지법에는 외부강의등 신고와 관련하여 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은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는바,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면 외부강의등의 신고 기간인 10일에는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며, 신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신고 만료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 3. 관련 : 징계 양정)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과 관련하여서는 소속 기관에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와 관련하여 징계 시효 도과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사전, 사후신고

Q 외부강의 신고 시 사전 또는 사후 둘 중 한 번만 신고하면 되나요?

A 신고기한은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까지이므로 신고자가 요청자, 요청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 요청 명세 등을 사전에 안 경우라면 사전에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일괄신고

Q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매주 1회, 2개월)를 요청받고, 2개월 강의를 모두 종류한 후에 외부강의를 신고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나요?

A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라면 외부강의등을 하는 자가 강의시간 등을 기재하여 1건으로 일괄 신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 강의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가 아닌 최초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여러 횟수의 강의

Q 5월 20일, 27일, 31일 총 3회에 걸쳐 주제, 대상이 동일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6월 4일에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였는데, 지연하여 신고한 것인가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는 외부강의등 사례급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각각을 1회의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준수는 1회 강의별로 각 강의마다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신고기한 미준수 시 조치사항

Q 외부강의등 신고 기한 미준수 사항을 적발하였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21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사례 기고에 대한 신고

Q 기고는 요청기관으로부터 기고 작성 요청을 받고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A 외부강의등을 '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므로, 기고를 '하는' 시점, 즉 원고를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사례 기고를 수정, 보완하는 경우

Q 기고의 경우 마친 날을 기고문의 수정 및 보완 등 편집이 모두 완료된 상태로 제출된 날로 볼 수 있나요?

A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은 외부강의등을 실제로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고의 경우에도 기고를 하는 시점, 즉 원고를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원고를 보내고 이후 원고 수정(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마친 날을 계속 연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동영상 강의

Q 온라인(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기산일이 강의 동영상 촬영일, 강의 동영상 사용일 중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은 실제로 강의를 수행한 날을 의미하므로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날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신고기한 이후 사례금 지급을 안내받은 경우

Q 외부강의를 요청받을 당시 사례금이 없는 줄 알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강의 후 몇 개월이 지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를 받은 즉시 외부강의등 신고를 한다면 지연하여 신고한 것인가요?

A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요청기관이 사례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위, 공직자등이 10일이 지난 이후 알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등 보완신고(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리딩케이스 2 신고방법

우리 연구원에서는 외부강의, 세미나 참석, 평가위원 활동 등 대외활동을 신고할 때 무조건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때 요청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을 꼭 받아야 하는지요? 기타 증빙자료(이메일, 세미나 팜플렛 등)로 갈음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부서장에게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반드시 기관장에게 해야 하는지요?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청탁금지법령상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로서 원칙적으로 공문, 또는 최소한 이메일, 전화문자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참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외부강의등은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기관별로 마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에 따르거나 해당 공공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리딩케이스 3 신고기관(파견자)

기초자치단체에서 타 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파견 발령받아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고 복무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외부강의의 신고를 원소속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파견 발령받아 실제로 근무 중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인 타 공공기관에 해야 하나요? 더불어 이 경우에 외부강의에 해당되는(회의참석수당, 평가수당, 심사수당, 자문수당 등의) 지급기준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파견된 기관이 어디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파견된 경우라면 실질적 직무수행을 하고, 복무 등의 지휘·감독을 받는 파견된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다른 관련 법령 또는 원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신고 요구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이 포함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1시간당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이고,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의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나목 참고).

※ 질의하신 내용 중 평가·심사·자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리딩케이스 4 신고 상대방(소속기관장)

공공기관 대외활동 관련규정에서는 직원에 대한 외부강의 횟수 상한을 기간별로 설정하고, 상한 초과시에는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장의 승인건수가 많아짐이 우려됨에 따라, 기관 위임전결규정을 적용하여 기관장 사전승인 사항을 하위 직급자에게 권한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다만,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속기관장이 외부강의등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면 됩니다.

유사사례 소속부서장에게 신고

Q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 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 소속기관장에게 외부강의를 신고하도록 되었는데, 소속부서장에게 신고해도 되나요?

- 기관장 : 총장
- 부서장 : 단과대학장(17, 대학원및특수대학원장(14),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본부장 등

※ 관련법령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A 기관 내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라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소속부서장이나 청탁방지담당관에게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사사례 권익위에 신고 여부

Q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권익위에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시, 신고의무는 '소속기관장'에게만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5 계속적 강의

국립대 교원 중 계속적으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회의 및 강의가 있을 때마다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기간 계속되는 강의에 대해 해당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경우 1건으로 일괄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속적 강의가 겸직허가를 받고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겸직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필요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6 재신고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한 문의와 이미 신고절차를 거쳐 결재를 올렸으나 반려된 경우 이것을 기간이 지난 후 알게되었을 때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신고서를 상신했을 때 기간 내였으므로 재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은 ○○군 청소년수련관으로 ○○군에서 주최하고 운영은 위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곳에서 직업체험으로 외부강의를 이틀 진행하였고 여기에 따른 수당 3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신고는 10일 이내 하였으나 한달이 지나서야 반려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외부강의를 한 대상은 신고대상이 맞는지와 신고를 제 기간에 했지만 결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반려된 경우 상신 취소 후 재결재 시 외부강의 신고 기간을 지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 제2항).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사안의 활동이 상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4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취소 신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7 보완신고

1. 외부강의 등 신고는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일 기한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 기관에서는 어떤 처벌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2. 외부강의 등을 미신고한 경우와, 10일 기한을 넘겨서 신고한 경우, 두 사례 사이에는 다른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외부강의 미신고로 판단해야 하나요?
3.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였으나, 결재선 오류, 요청기관 공문 미첨부 등으로 인하여 검토자에 의하여 반려처리되었고, 추후 다시 신고한 경우(10일 지남), 서면 신고한 날짜를 최초 신고일로 보아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이때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규정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이나, 그 신고를 10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모두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위반으로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21조의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 등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은 관련 법령 및 소속된 기관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할 사항입니다.

한편 질의 4번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10일이 지난 이후 신고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등 보완신고(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수령한 사례금 금액이 신고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Q 신고한 외부강의 사례금 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따라서, 실제로 받은 사례금 총액을 기준으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과다해서 신고한 경우

Q 외부강의 신고 시의 교통비가 실제 받은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한가요?

A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출 당시 사례금 총액 등에 보완(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딩케이스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일반기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도 국가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리딩케이스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로부터 외부강의를 요청받았고 해당 공문에 국립대학교 총장 직인과 국립대학교 총장의 이름으로 발송되어 있었는데, 다만 결재라인 상에 산학협력단의 결재 라인을 거쳐 산학협력단장의 결재를 최종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례금 제공자도 산학협력단으로 확인되는바, 이런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에 따른 법인으로 학교와는 독립된 조직이며, 산학협력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7조 등에 따라 제정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교육부고시)에 따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공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라면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에서 제외될 것이나,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인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안의 경우 공직자가 국립대학교로부터 국립대학교 총장 직인과 국립대학교 총장의 이름으로 발송된 공문을 통해 외부강의를 요청받았다면 산학협력단장 결재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장 직인과 이름으로 작성된 공문으로서 국립대학교가 명시적인 요청주체로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이 신고의무가 없다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의 범위)

외부강의 신고 매뉴얼 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방청'의 경우 정부조직법상 개별법으로 규정중인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으로 판단하여 신고의무 제외대상 기관으로 봐도 되나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방청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34조제7항에서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청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았다면 해당 외부강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될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등 내부기준에 따라 외부활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정당에서 요청한 강의

Q 정당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도 신고의무가 제외되나요?

A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정당법 제2조)으로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강의

Q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도 신고의무가 제외되나요?

A 국회의원은 국회 조직의 일부로서, 국회의원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은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례금 상한액 기준은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사사례 용역계약 체결 시

Q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이 교육 콘텐츠 개발 업체와 온라인 교육 용역계약(전액 국비)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강사를 추천할 수 있고, 강사 섭외와 계약은 개발 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다면 '외부강의등 요청자'를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한자에 대한 판단은 명확성, 객관성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문 등으로 요청한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안에서 교육콘텐츠 개발 업체에서 강사에게 공문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를 국가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유사사례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가 요청하는 경우

Q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인 ○○공단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나요?

A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은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공단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의 경우는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사사례 국립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Q 국립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도 신고의무가 제외되나요?

A 국립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는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국립학교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제외됩니다.

유사사례 사립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Q 사립학교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도 신고의무가 제외되나요?

A 사립학교는 신고의무가 제외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리딩케이스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군부대)

군부대에서 현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은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온 교육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들어온 교육 같은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

사안과 관련하여,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대해 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군의 부대(○○사단, ○○대대 등 포함)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학교)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부강의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는 신고의 대상인지요?

사립학교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에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나,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사전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사사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

Q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해당되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기재부 소속기관인 KAIST의 경우와 같이, 국가나 지자체 소속 기관도 신고 제외 대상인지 알려 주십시오.

A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중 국공립학교도 포함하므로,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KAIST와 같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유사사례 산학협력단

Q 산학협력단 소속의 사업단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같은 대학의 교수에게 강의를 맡기고 이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 국립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인 동시에, 학칙에 따라 해당 국립대학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산하 대학기구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곳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일 경우 미신고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국립대학 산학협력단'도 국가기관에 해당되는지요?

A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은 외부강의등의 미신고 대상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리딩케이스 13 신고의무 면제 여부(공직유관단체①)

○○진흥원이나 □□진흥회 등 각종 진흥회가 엄청 많은데, 진흥원의 경우 대부분 국가나 시의 예산으로 출자되기도 하거나 국가와 시가 동시에 기금 출연하여 설립되기도 합니다. 분명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의 예산을 사용하지만, 이 조직을 외부강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기준과 그곳에 출장을 갈 경우, 여비를 모두 받아야 하는지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문의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인 행정기구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인 행정기구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조건을 갖추지 않았다면 신고의무가 있는 기관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공직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직자는 외부강의등 요청 기관으로부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비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딩케이스 14 신고의무 면제 여부(공직유관단체②, 공무수행사인)

공직유관단체가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협의체 위원을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메일로 추천받아 선정하였고, 해당 위원이 공직유관단체의 요청 공문을 받아 발표 및 토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교육청에서 회의 참석에 대한 직접적인 요청 공문이 없더라도 교육청의 공식 추천이 있었으므로,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볼 수 있나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및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 등이 포함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먼저, 해당 협의체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만약 해당 협의체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라면 해당 협의체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것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한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하고 있는바, 외부강의등은 동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협의체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동법상 외부강의등의 규율대상이 아니므로 외부강의 신고의무가 없다 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위원이 공직유관단체의 요청 공문을 받아 발표 및 토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경우,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협의체의 위원 중 공직자인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리딩케이스 15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등 A에게 A의 모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A의 직무와 관련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A는 재능기부형식으로 사례금 없이 강의를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사안과 같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Ⅶ. 기타

Ⅶ 기타

리딩케이스 1 기본권 침해 여부

외부강의등 신고 내용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사상·신념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요?

외부강의등 신고는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결재를 받는 의미가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차단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리딩케이스 2 복무 관련

교대근무하는 소방관으로, 같은 국가기관(소방) 외부강사 출강 시 본 근무시간은 출장으로 처리하는 건 맞는데, 비번(휴일)에 출강을 하게 되면 출장(근무)처리가 되나요?

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사(외부강의) 출강에 따른 복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번(휴일)에 외부강사(외부강의) 출강을 하게 되면 출장(근무)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소속기관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 록

1.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의 주요 사례

구분	사 례	해당여부
강연·회의 등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강의·강연	○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	○
	■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
	■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 진행	○
	■ 온라인 동영상 강의	○
	■ 법령(조례·규칙 포함)상 위원회 등 위원으로 회의 참석	×
	■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	×
기고	■ 신문·잡지에의 기고	○
	■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 작성	×
	■ 잡지·저널 등 요청 없이 공모·심사에 의해 실시하는 논문 게재	×
기타	■ 언론 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 프로그램 등 출연	×
	■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 또는 전시	×
	■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자문	×
	■ 방송사 아나운서의 행사 단순 진행	×

2. 초과사례금 신고서 양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최초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관련 법령

법 제10조(외부강의등), 법 제23조제4항(과태료 부과)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시행령 제25조(사례금 상한액), 제26조(신고방법 등)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발 행 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홈페이지 www.acrc.go.kr

「2026年 版」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주요 질의·회신집

2025.12.16. 해석례까지 반영

국민권익위원회